
2014년 방송평가 세부기준 내용 / 편성 / 운영 영역

2014. 3.

편성평가정책과

목 차 |

□ 내용영역

1.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1
2.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2
3.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3
4. 자체심의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5
5.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7
6.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9
7.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15

□ 편성영역

8.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16
9.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17
10.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19
11.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23
12.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26
13.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32
14.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평가 34
15. 직접제작·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 평가 36
16. 지역채널의 액세스(시청자제작)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37
17.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현황 종합 평가 38
18. 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39
19. 시청자정보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20.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편성 종합 평가 41

목 차 II

□ 운영영역

| | |
|---|----|
| 21.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 43 |
| 22. 내부 감사 및 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평가 | 44 |
| 23. 경영진의 비전과 조직관리 능력을 포함한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평가 | 47 |
| 24.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 49 |
| 25. 방송기술 투자 평가 | 51 |
| 26. 장애인 고용 평가 | 53 |
| 27. 여성 고용 평가 | 54 |
| 28.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 | 56 |
| 29.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평가 | 57 |
| 30.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59 |
| 31.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 | 61 |
| 32.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 64 |
| 33.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 66 |
| 34.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 | 67 |
| 35.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 | 69 |
| 36.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 71 |
| 37. 자막고지방송, 가상종료 추진실적 평가 | 73 |
| 38. 콜센터 운영실적 평가 | 76 |
| 39. 송신시설 디지털 전환 실적 평가 | 79 |
| 40. 디지털 전환 홍보실적 평가 | 80 |
| 41. 디지털 상품/HD 상품 전환 및 가입률 평가 | 82 |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가.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이상인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중 KBS, MBC, SBS와 종편PP

나. 배점방식

-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결과를 배점(70점)에 맞춰 환산한 후 평가점수로 반영
(환산점수 = 프로그램 평가지수 점수 × 70 / 10)

| 평가척도 | 배점 | |
|--------------------|-------|-------|
| | 지상파TV | 종편PP* |
|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 70점 | 35점 |

※ 종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7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KI 시청자평가조사 중 프로그램 평가지수 조사결과만 방송 평가에 반영
- 프로그램 평가지수는 개별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1점 척도(0~10점)으로 구성된 만족도 평가지수(SI : Satisfaction Index)와 품질 평가지수(QI : Quality Index)의 결과 값을 합산, 평균하여 산출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가.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이상인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중 KBS, MBC, SBS와 종편PP

나. 배점방식

| 구분 | 세부기준 | 배점 | |
|-------------------|---------------------------------------|--------------|--------------|
| | | 지상파 TV (25점) | 종편PP (125점)* |
| 실시여부 | - 실시 9점/ 미실시 0점 | 9점 | |
| 평가제도 축소여부 | - 유지 3점/ 축소 0점 | 3점 | |
| 평가결과 제출여부 | - 제출 2점/ 미제출 0점 | 2점 | |
| 평가결과 공개여부 | - 전문공개 6점/ 공개열람 4점/ 요약본 공개 2점/ 미공개 0점 | 6점 | |
|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여부 | - 피드백 시스템 구축 5점/ 단순 피드백 3점/ 없음 0점 | 5점 | |

(*)종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실시여부의 경우, 연 1회 이상의 조사 실시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제도 축소 여부의 경우, 조사예산규모 기준으로 전년 대비 비교 평가. 예산규모의 축소/확대 기준은 1,500만원(전국조사 최소표본단위 1,000명 x 전화설문조사 단가 15,000원)
- 평가결과 공개여부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사내 열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미공개로 간주. 공개수준(요약본 공개, 전문공개)에 따라 차등 평가함. 다만,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전문을 방통위 등 외부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회 도서관 등에서 공개열람이 가능한 경우, 중간점수(4점) 부여
-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 여부의 경우, 사장보고, 임원회의, 편성회의, 제작진 설명회, 경영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제작진 또는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순 피드백으로, 프로그램 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춘 경우를 피드백 시스템 구축으로 간주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보도 및 홈쇼핑 PP를 제외한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방송프로그램 수상실적을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평가, 매체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최고점을 기준으로 9 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 (*)매체구분 : 지상파TV·지상파DMB-TV / 지상파R·지상파DMB-R / 음악FM / SO·위성·위성DMB/종편PP

|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 지상파 TV | 지상파R, 지상파DMB | SO, 위성방송 | 위성 DMB | 종편 PP |
|-------------------|-----------|-----------------|-------------|-----------|----------|
| | 30점 | 25점 | 10점 | 20점 | 15점 |
| 87.5% 이상 | 30점 | 25점 | 10점 | 20점 | 15점 |
| 75% 이상 ~ 87.5% 미만 | 27점 | 22.5점 | 9점 | 18점 | 13.5점 |
| 62.5% 이상 ~ 75% 미만 | 24점 | 20점 | 8점 | 16점 | 12점 |
| 50% 이상 ~ 62.5% 미만 | 21점 | 17.5점 | 7점 | 14점 | 10.5점 |
| 37.5% 이상 ~ 50% 미만 | 18점 | 15점 | 6점 | 12점 | 9점 |
| 25% 이상 ~ 37.5% 미만 | 15점 | 12.5점 | 5점 | 10점 | 7.5점 |
| 12.5% 이상 ~ 25% 미만 | 12점 | 10점 | 4점 | 8점 | 6점 |
| 12.5% 미만 | 9점 | 7.5점 | 3점 | 6점 | 4.5점 |
| 0% | 6점 | 5점 | 2점 | 4점 | 3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평가기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수상실적 인정범위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대상(大賞, 창의발전, 사회문화, 지역발전, 뉴미디어, 시청자제작, 라디오 프로그램상 및 특별상) 등에 대한 수상실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상실적
 - 방송유관단체 : 전국규모의 방송유관단체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시상제도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연간 및 분기, 월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 및 개인(제작부문에 한함)에 대한 수상실적
 - 시청자단체 :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청자단체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시상제도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연간 및 분기, 월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 및 개인
(제작부문에 한함)에 대한 수상실적

- 기 타 : 위원회가 인정하는 해외 우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명망 있는 언론단체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등

○ 대상 프로그램 및 수상기간에 따른 원칙에 의거하여 배점함.

-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수상실적은 개별 장르에 한정된 수상실적에 우선함.
- 연간단위의 수상실적은 분기 및 월간단위의 수상실적에 우선함.

○ 자체제작이 50%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자체제작 프로그램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수상실적 점수의 50%를 가산하여 반영함.

○ 자체제작이 아닌 타 방송사의 우수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수상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실적 점수의 50%를 반영함.

○ 동일한 프로그램이 다수의 시상주체로부터 수상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상실적 점수 1회만 인정함.

○ 개인상 부문을 포함함.(단, 제작부문에 한함)

자체심의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구분 | 세부기준 | 지상파TV, 지상파 DMB-TV | 지상파R, 지상파 DMB-R | SO, 위성방송, 위성DMB | 보도 PP | 홈쇼핑 PP | 종합 PP(*) |
|---------------------|-----------------------------|-------------------------|-----------------------|-----------------------|----------|-----------|-------------|
| | | 25점 | 25점 | 20점 | 20점 | 50점 | 22.5점 |
| 전담부서 설치여부 | - 설치 만점/ 미설치 0점 | 5점 | 10점 | 5점 | 5점 | 25점 | * |
| 제작물 심의비율 | - <표1> 참조 | 5점 | - | 5점 | 3점 | - | * |
| 제작진 참여여부 | - 미참여 만점/참여 0점 | 5점 | 10점 | 5점 | 3점 | 25점 | * |
| 방통위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 - <표2> 참조 | 10점 | 5점 | 5점 | 3점 | - | * |
| 공정보도를 위한 자체노력 여부 | - 자체 노력 여부 평가 <표3> 참조 | - | - | - | 6점 | - | |

(*)종합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9/10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물 심의비율, 제작진 등의 심의 참여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비율, 공정보도를 위한 자체노력 여부 등을 평가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각 항목별(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물 심의비율,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비율 등) 평가 점수 합산
 - 자체심의 미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건수에 따라 평가점수 총점에서 감점처리 (1건에서 5건 : 1.5점, 6건 이상 : 3점 감점)
 -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은 사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심의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문제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

〈표1〉 제작물 심의비율에 따른 점수표

| 제작물심의비율 | 80%이상-100% | 60%이상-80%미만 | 40%이상-60%미만 | 20%이상-40%미만 | 20%미만 |
|--|------------|-------------|-------------|-------------|-------|
| 지상파TV, 지상파DMB-TV, SO, 위성방송, 위성DMB, 종편PP | 5점 | 4점 | 3점 | 2점 | 0점 |
| 보도PP | 3점 | 2점 | 1점 | 0점 | 0점 |

〈표2〉 심의제재결과 사전지적 비율에 따른 점수표

| 사전지적비율 | 80%이상-100% | 60%이상-80%미만 | 40%이상-60%미만 | 20%이상-40%미만 | 20%미만 |
|--|------------|-------------|-------------|-------------|-------|
| 지상파TV, 지상파DMB-TV 종편PP | 10점 | 8점 | 6점 | 4점 | 0점 |
| 지상파R, 지상파DMB-R, SO, 위성방송, 위성DMB | 5점 | 4점 | 3점 | 2점 | 0점 |
| 보도PP | 3점 | 2점 | 1점 | 0점 | 0점 |

* 수중계 프로그램 제외

〈표3〉 공정보도를 위한 자체 노력 여부에 따른 점수표

| 공정보도를 위한 자체노력(6점) |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여부(3점) | 제도적 장치의 운영결과(3점) | | | |
|-------------------|--------------------------|------------------|--------|--------|---------|
| | | 운영결과 上 | 운영결과 中 | 운영결과 下 | 운영결과 없음 |
| 보도PP | 3점/0점 | 3점 | 2점 | 1점 | 0점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지상파TV/R, 지상파DMB |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위성DMB | 종편PP |
|----------------------|--------------------|------------------------------------|------|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100점 | 70점 | 85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심의관련 제규정 준수 배점 기준, 제재조치 결과 반영 감점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제74조(협찬고지)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등
 - 수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점수에 50%만 반영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총점에서 감점
 - 주의 1건 당 1점 감점
 - 경고 1건 당 2점 감점
 -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 당 각 4점 감점, 병과시 6점 감점
 - 과태료 1건 당 4점 감점
 - 시정명령 1건 당 8점 감점
 - 과징금 부과시
 - ①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 1건 당 10점 감점
 - ②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 1건 당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 감점)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적용시점 : '14년 방송실적을 평가하는 '15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지상파TV/R, 지상파DMB |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위성DMB | 종편PP |
|----------------------|--------------------|------------------------------------|------|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100점 | 70점 | 85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심의관련 제규정 준수 배점 기준, 제재조치 결과 반영 감점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제74조(협찬고지)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등
 - 수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점수에 50%만 반영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총점에서 감점
 - ① 주의 1점
 - ② 경고 2점
 -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 ②+③, ②+④ 5점
 - ③+④, ②+③+④ 6점
 - ⑤ 과태료 4점
 - ⑥ 시정명령 8점
 -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15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 감점)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중 법적 의무가 없는 EBS는 평가 제외

나. 배점방식

| 구분 | 세부기준 | 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 홈쇼핑PP |
|-----------|-----------------|----------------------|-------|
| | | 30점 | 20점 |
| 편성시간대 | - <표1>, <표2> 참조 | 10점 | 8점 |
| 시청자평가원 운영 | - <표3> 참조 | 6점 | 4점 |
| 평가원 운영보고서 | - <표4> 참조 | 6점 | 4점 |
| 시청자평가시간 | - <표5>, <표6> 참조 | 8점 | 4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는 자체제작과 수중계 프로그램을 모두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0점
 - 편성시간대는 Kobaco 요금표를 기준으로 하되 평일 낮과 주말 낮 시간대를 차등 구분
 - 자체제작 비율 50% 미만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 편성한 경우, <표1>의 편성시간대에 따른 평가를 실시, 평가점수의 50%를 가산하여 반영함.
 - 다만, 수중계와 자체제작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점수의 합계는 만점인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표1>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따른 등급(지상파TV의 경우)

| 평일 편성시간대 | 등급(점수) | 토/일 편성시간대 | 등급(점수) |
|-------------|--------|-------------|-------------|
| 20:00-23:00 | A(10점) | 19:00-23:30 | A(10점) |
| 08:30-09:30 | B(8점) | 08:30-19:00 | B(8점) |
| 18:00-19:00 | | 23:30-24:30 | |
| 07:00-08:30 | C(5점) | 07:00-08:30 | C(5점) |
| 09:30-11:00 | | D(2점) | 24:30-07:00 |
| 19:00-20:00 | | | |
| 23:00-24:00 | | | |
| 24:00-07:00 | | | |
| 11:00-18:00 | | | |

<표2>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따른 등급(PP의 경우)

| 편성시간대 | 등급(점수) |
|------------------|--------|
| 12:00-18:00 | A(8점) |
| 22:00-24:00 | |
| 24:00-01:00 | B(6점) |
| 04:30-07:00(월-토) | |
| 05:00-07:00(일) | |
| 09:00-12:00 | |
| 18:00-20:00 | C(4점) |
| 01:00-02:00 | |
| 07:00-09:00 | D(2점) |
| 02:00-04:30(월-토) | |
| 02:00-05:00(일) | |
| 20:00-22:00 | |

* 보도PP·종합PP 점수산정 방식 : 8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0/8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 시청자평가원 운영 및 운영보고서 평가

- 시청자 평가원 운영의 경우, 평가원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
- 시청자평가원 운영보고서는 프로그램 방송일자, 평가원 명, 출연시간, 평가 내용/아이템 등이 담겨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청자평가원의 평가가 자사 프로그램 홍보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 1점 감점
- 시청자평가시간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시간 중 자사 프로그램 홍보나 기획 프로그램을 제외한 시청자의견 코너가 차지하는 시간 비율(시청자평가원 시간 포함, 진행자 멘트 /브리지 등 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표3> 평가원 운영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

| 시청자 평가원 운영 | 운영정도(등급) | | | |
|----------------------|----------|----------|----------|--------|
| | 3인 이상(A) | 2인 운영(B) | 1인 운영(C) | 미운영(D) |
| 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 6점 | 4점 | 2점 | 0점 |
| 홈쇼핑PP | 4점 | 3점 | 2점 | 0점 |

<표4> 평가원 운영보고서 제출에 따른 평가점수

| 시청자 평가원 운영 | 제출 여부 | | 제출보고서 평가 | |
|----------------------|-------|-----|----------|----|
| | 제출 | 미제출 | 양호·우수 | 미흡 |
| 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 3점 | 0점 | 3점 | 1점 |
| 홈쇼핑PP | 2점 | 0점 | 2점 | 1점 |

<표5> 시청자 평가시간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 시청자 평가 시간(프로그램 기준) | 등급 |
|--------------------|-------|
| 30% 이상 | A(8점) |
| 25% 이상 - 30% 미만 | B(5점) |
| 20% 이상 - 25% 미만 | C(2점) |
| 20% 미만 | D(0점) |

<표6> 시청자 평가시간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홈쇼핑PP)

| 시청자 평가 시간(프로그램 기준) | 등급 |
|--------------------|-------|
| 15분 이상 | A(4점) |
| 10분 이상 - 15분 미만 | B(3점) |
| 5분 이상 - 10분 미만 | C(2점) |
| 5분 미만 | D(0점)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 적용시점 : '14년 방송실적을 평가하는 '15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중 법적 의무가 없는 EBS는 평가 제외

나. 배점방식

| 구분 | 세부기준 | 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 홈쇼핑PP |
|-----------|-----------------|----------------------|-------|
| | | 30점 | 20점 |
| 편성시간대 | - <표1>, <표2> 참조 | 10점 | 8점 |
| 시청자평가원 운영 | - <표3> 참조 | 6점 | 4점 |
| 평가원 운영보고서 | - <표4> 참조 | 6점 | 4점 |
| 시청자평가시간 | - <표5>, <표6> 참조 | 8점 | 4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는 자체제작과 수중계 프로그램을 모두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0점
 - 자체제작 비율 50% 미만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 편성한 경우, <표1>의 편성시간대에 따른 평가를 실시, 평가점수의 50%를 가산하여 반영함.
 - 다만, 수중계와 자체제작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점수의 합계는 만점인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표1>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따른 등급(지상파TV의 경우)

| 편성시간대 | | | 등급 (점수) |
|-------------|----------------------------|-------------|------------|
| 월-금 | 토 | 일 | |
| 20:00-24:00 | 19:00-23:30 | 18:00-23:30 | A(10점) |
| 08:30-09:30 | 08:30-09:30 | 08:30-18:00 | B(8점) |
| 19:00-20:00 | 17:00-19:00 23:30-24:00 | 23:30-24:00 | |
| 07:00-08:30 | 07:00-08:30 | 07:30-08:30 | C(5점) |
| 09:30-12:00 | 09:30-17:00 | - | |
| 18:00-19:00 | - | - | |
| 24:00-00:30 | 24:00-00:30 | 24:00-00:30 | |
| 00:30-07:00 | 00:30-07:00 | 00:30-07:30 | D(2점) |
| 12:00-18:00 | | | |

* 지상파TV의 편성시간대는 KOBACO요금표를 기준으로 산정

<표2>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따른 등급(PP의 경우)

| 편성시간대 | | 등급 (점수) |
|-------------|-------------|------------|
| 월-금 | 주말 | |
| 19:00~01:00 | 17:00~01:00 | A(8점) |
| 06:00~19:00 | 07:00~17:00 | B(6점) |
| 01:00~06:00 | 01:00~07:00 | C(3점) |

* 보도PP·종합PP 점수산정 방식 : 8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0/8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 시청자평가원 운영 및 운영보고서 평가

- 시청자 평가원 운영의 경우, 평가원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
- 시청자평가원 운영보고서는 프로그램 방송일자, 평가원 명, 출연시간, 평가 내용/아이템 등이 담겨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청자평가원의 평가가 자사 프로그램 홍보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 1점 감점
- 시청자평가시간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시간 중 자사 프로그램 홍보나 기획 프로그램을 제외한 시청자의견 코너가 차지하는 시간 비율(시청자평가원 시간 포함, 진행자 멘트 /브리지 등 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표3> 평가원 운영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

| 시청자 평가원 운영 | 운영정도(등급) | | | |
|----------------------|----------|----------|----------|--------|
| | 3인 이상(A) | 2인 운영(B) | 1인 운영(C) | 미운영(D) |
| 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 6점 | 4점 | 2점 | 0점 |
| 홈쇼핑PP | 4점 | 3점 | 2점 | 0점 |

<표4> 평가원 운영보고서 제출에 따른 평가점수

| 시청자 평가원 운영 | 제출 여부 | | 제출보고서 평가 | |
|----------------------|-------|-----|----------|----|
| | 제출 | 미제출 | 양호·우수 | 미흡 |
| 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 3점 | 0점 | 3점 | 1점 |
| 홈쇼핑PP | 2점 | 0점 | 2점 | 1점 |

<표5> 시청자 평가시간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지상파TV, 보도PP, 종편PP)

| 시청자 평가 시간(프로그램 기준) | 등급 |
|--------------------|-------|
| 30% 이상 | A(8점) |
| 25% 이상 - 30% 미만 | B(5점) |
| 20% 이상 - 25% 미만 | C(2점) |
| 20% 미만 | D(0점) |

<표6> 시청자 평가시간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홈쇼핑PP)

| 시청자 평가 시간(프로그램 기준) | 등급 |
|--------------------|-------|
| 15분 이상 | A(4점) |
| 10분 이상 - 15분 미만 | B(3점) |
| 5분 이상 - 10분 미만 | C(2점) |
| 5분 미만 | D(0점) |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종편PP

나. 배점방식

| 구분 | 세부기준 | 배점 | |
|--|---|----------------|----------------|
| | | 지상파TV (20점) | 종편PP (10점*) |
| 의견수렴 전담부서 설치 여부 | - 설치 만점/ 미설치 0점 | 5점 | |
| 의견수렴 결과정리 제출여부 및 평가 | - 제출 2점/ 미제출 0점 -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 5점 | |
| 의견수렴 결과정리 공개여부 | - 전문 공개 5점/ 공개열람 3점/ 요약본 공개 2점/ 미공개 0점 | 5점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제시, 권고 사항에 대한 방송사의 처리 정도 | - 반영 5점 / 관계자 전달 2점 / 미전달 0점 | 5점 | |

(*)종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2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의견수렴 전담부서의 경우, 시청자 의견 접수 처리 등과 같은 관련업무의 분장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견수렴 결과정리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 등을 의미
- 의견수렴 결과정리 공개여부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사내 열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미공개로 간주. 또한, 공개한 경우라도 공개수준(요약본 공개, 전문공개)에 따라 차등 평가함. 다만,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전문을 방통위 등 외부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회 도서관 등에서 공개열람이 가능한 경우, 중간점수(3점) 부여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배점 |
|----------------------|-----|
|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3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내지 제73조(방송광고등) 및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시청권 등) 내지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과태료)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외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보도PP, 종편PP

나. 배점방식

| 구분 | 세부기준 | 지상파TV | 보도PP | 종편PP |
|------------------------|-----------------|-------|--------|---------|
| | | 30점 | 20점(*) | 25점(**) |
|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 - 개최 만점/미개최 0점 | 5점 | | |
| 회의록 공개 여부 | - 공개 만점/비공개 0점 | 8점 | | |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여부 | - <표1> 참조 | 5점 | | |
|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여부 | - 시한준수 만점/위반 0점 | 5점 | | |
| 월간 운영 실적에 대한 정성적 평가 | - <표2> 참조 | 7점 | | |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2/3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5/6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월간 운영실적 보고시한(매월 20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는 0.5점씩 감점(최대 5점)하고, 월간 운영실적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시청자위원의 참석정도' '운영실적의 내용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표1>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비율에 따른 평가점수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비율 | 80% 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40%이상 | 40%미만 20%이상 | 20%미만 | 없음 |
|-----------------------|--------|----------------|----------------|----------------|-------|----|
| 점수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표2> 월간 운영실적의 정성적 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 운영실적 정도 | 우수 | 양호 | 미흡 |
|---------|----|----|----|
| 점수 | 7점 | 5점 | 3점 |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 적용시점 : '14년 방송실적을 평가하는 '15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보도PP, 종편PP

나. 배점방식

| 구분 | 세부기준 | 지상파TV | 보도PP | 종편PP |
|------------------------|----------------------|-------|--------|---------|
| | | 30점 | 20점(*) | 25점(**) |
|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 - 개최 만점/미개최 0점 | 5점 | | |
| 회의록 공개 여부 | - 공개 만점/비공개 0점 | 8점 | | |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여부 | - <표> 참조 | 5점 | | |
|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여부 | - 시한준수 만점/위반 0점 | 5점 | | |
| 시청자 위원회 운영 만족도 평가 | - 운영의 충실성, 의견반영 정도 등 | 7점 | | |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2/3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5/6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월간 운영실적 보고시한(매월 20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는 0.5점씩 감점(최대 5점)

<표1>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비율에 따른 평가점수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비율 | 80% 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40%이상 | 40%미만 20%이상 | 20%미만 | 없음 |
|-----------------------|--------|----------------|----------------|----------------|-------|----|
| 점수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평가는 각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에게 설문조사한 값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치 사용. 이 때, 설문지 내용은 운영의 충실성, 의견 반영 정도 등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점수는 5점 척도를 사용함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종편PP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배점 | |
|---|----------------|---------------|
| | 지상파TV (60점) | 종편PP (30점) |
| -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표1> 참조) | 30점 | |
| -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 (<표2>참조) | 30점 | |

(*종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6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어린이 프로그램’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게 정규 또는 특집으로 제작되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3호 :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과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 프로그램 장르 중 뉴스, 시사보도(매거진 등), 다큐멘터리(탐사/기행 등), 교육·문화예술, 퀴즈쇼를 포함한다.
 - 다만, 기타 장르에 속하는 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1. 취학전 아동 종합교육 프로그램(예시> TV유치원)
2. 동요/동화구연/웅변/춤 등 어린이 참여 경연대회 프로그램
3. 어린이 언어교육, 과학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 특정분야 교육 및 정보제공 목적이 명백한 프로그램

○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은 8%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표1〉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배점표

| | | | | | | | | |
|-------|---------|---------|---------|---------|---------|---------|---------|---------|
| 8% 이상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미만 |
| | 미만 | |
|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
| 30점 | 26.25점 | 22.5점 | 18.75점 | 15점 | 11.25점 | 7.5점 | 3.75점 | 0점 |

○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은 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표2〉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배점표

| | | | | | | | | |
|-------|---------|---------|---------|---------|---------|---------|---------|---------|
| 4% 이상 | 4.0% 미만 | 3.5% 미만 | 3.0% 미만 | 2.5% 미만 | 2.0% 미만 | 1.5% 미만 | 1.0% 미만 | 0.5% 미만 |
| | 3.5% 이상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1.5% 이상 | 1.0% 이상 | 0.5% 이상 | |
| 30점 | 26.25점 | 22.5점 | 18.75점 | 15점 | 11.25점 | 7.5점 | 3.75점 | 0점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 적용시점 : '14년 방송실적을 평가하는 '15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종편PP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배점 | |
|---|----------------|---------------|
| | 지상파TV (60점) | 종편PP (30점) |
|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표1> 참조) | 30점 | |
|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 (<표2>참조) | 30점 | |

(*)종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6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어린이 프로그램'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게 정규 또는 특집으로 제작되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3호 :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과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 프로그램 장르 중 뉴스, 시사보도(매거진 등), 다큐멘터리(탐사/기행 등), 교육·문화예술, 퀴즈쇼를 포함한다.
- 다만, 기타 장르에 속하는 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1. 취학전 아동 종합교육 프로그램(예시> TV유치원)
2. 동요/동화구연/웅변/춤 등 어린이 참여 경연대회 프로그램
3. 어린이 언어교육, 과학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 특정분야 교육 및 정보제공 목적이 명백한 프로그램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은 8%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표1〉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배점표

| | | | | | | | | |
|-------|---------|---------|---------|---------|---------|---------|---------|---------|
| 8% 이상 | 8.0% 미만 | 7.0% 미만 | 6.0% 미만 | 5.0% 미만 | 4.0% 미만 | 3.0% 미만 | 2.0% 미만 | 1.0% 미만 |
|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
| 30점 | 26.25점 | 22.5점 | 18.75점 | 15점 | 11.25점 | 7.5점 | 3.75점 | 0점 |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은 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표2〉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배점표

| | | | | | | | | |
|-------|---------|---------|---------|---------|---------|---------|---------|---------|
| 4% 이상 | 4.0% 미만 | 3.5% 미만 | 3.0% 미만 | 2.5% 미만 | 2.0% 미만 | 1.5% 미만 | 1.0% 미만 | 0.5% 미만 |
| | 3.5% 이상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1.5% 이상 | 1.0% 이상 | 0.5% 이상 | |
| 30점 | 26.25점 | 22.5점 | 18.75점 | 15점 | 11.25점 | 7.5점 | 3.75점 | 0점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나. 배점방식

- 지상파 방송(TV)과 종편PP의 경우,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의 편성 실적을 평가
- SO와 위성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 재전송시 장애인방송신호 누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을 통해 평가 (예: 지상파방송 재전송 캡처 화면 등, 단 지상파방송재전송의 대상은 KBS1 또는 EBS에 한함)
- 보도 및 홈쇼핑 PP의 경우, 자체 채널의 장애인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만을 평가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지상파TV | SO, 위성방송 | 보도PP, 홈쇼핑PP | 종편PP(*) |
|----------------|---|-------|-------------|----------------|---------|
| | | 60점 | 20점 | 10점 | 35점 |
| 자막방송 편성비율 | 7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표1> 참조) | 24점 | - | - | * |
| 수화방송 편성비율 | 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표2> 참조) | 12점 | - | - | * |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표2> 참조) | 24점 | - | - | * |
| 장애인시청지원 | 지상파방송 재전송시 장애인방송 신호 누실여부 (누실시 0점/ 아닐 경우 만점) | - | 10점 | - | - |
| | 자체채널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표3> 참조) | - | 10점 | 10점 | - |

(*)종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6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7/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정의

- 자막방송 프로그램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전자 코드 형태로 변환 전송하여, TV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 수화방송 프로그램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 안에 또 하나의 분리된 화면(Picture in Picture)을 통해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수화로 통역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 :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프로그램 인물들의 행동, 의상, 몸짓 및 기타 장면의 상황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표1〉 “자막방송 편성비율”에 따른 배점표

| | | | | | | | | | |
|-----------|--------|--------|--------|--------|--------|--------|--------|--------|--------|
| 자막방송 편성비율 | 70% 이상 | 70% 미만 | 62% 미만 | 54% 미만 | 46% 미만 | 38% 미만 | 30% 미만 | 22% 미만 | 14% 미만 |
| 점수 | 24점 | 21점 | 18점 | 15점 | 12점 | 9점 | 6점 | 3점 | 0점 |

〈표2〉 “수화/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에 따른 배점표

| | | | | | | | | | |
|------------------|-------|-------|---------|---------|---------|---------|---------|---------|----|
| 수화/화면 해설 방송 편성비율 | 5% 이상 | 5% 미만 | 4.2% 미만 | 3.5% 미만 | 2.8% 미만 | 2.1% 미만 | 1.4% 미만 | 0.7% 미만 | 0% |
| 수화방송 | 12점 | 10.5점 | 9점 | 7.5점 | 6점 | 4.5점 | 3점 | 1.5점 | 0점 |
| 화면해설방송 | 24점 | 21점 | 18점 | 15점 | 12점 | 9점 | 6점 | 3점 | 0점 |

〈표3〉 장애인 시청지원에 따른 배점표

| | | | |
|-------------------------|--------------|--------------|---------|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실적 | 주당 1시간 이상 편성 | 주당 30분 이상 편성 | 편성실적 없음 |
|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 10점 | 5점 | 0점 |

※ 수중계가 없는 독립지역방송사의 경우, 자막방송은 50%를,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방송은 각각 2.5%를 만점으로 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 적용시점 : '14년 방송실적을 평가하는 '15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나. 배점방식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의 편성 실적을 평가

-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지상파TV | SO, 위성방송 | 보도PP, 홈쇼핑PP | 종편PP |
|----------------|---|-------|-------------|----------------|------|
| | | 60점 | 20점 | 10점 | 35점 |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 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24점 | 8점 | 4점 | 14점 |
| 수화방송 편성비율 | | 12점 | 4점 | 2점 | 7점 |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 24점 | 8점 | 4점 | 14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정의

- 자막방송 프로그램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전자 코드 형태로 변환 전송하여, TV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 수화방송 프로그램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 안에 또 하나의 분리된 화면(Picture in Picture)을 통해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수화로 통역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 :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프로그램 인물들의 행동, 의상, 몸짓 및 기타 장면의 상황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R/DMB),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위성DMB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지상파 TV | 지상파R, 보도PP | 홈쇼핑 PP | 지상파/위성 DMB | 종편 PP |
|--------------------------|--|--------|------------|--------|------------|---------|
| | | 60점 | 70점(*) | 10점 | 10점 | 65점(**) |
|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 - 재난방송의 편성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 20점 | 20점 | 5점 | 2.5점 | |
| | - 재난피해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 20점 | 20점 | - | 2.5점 | |
| 재난방송 매뉴얼의 적정성 | - 자체 제작된 재난방송 매뉴얼 마련 여부(매뉴얼 마련시 만점/없을 경우 0점) | 5점 | 5점 | 5점 | 1.25점 | |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및 대응시스템 구축 |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 (관련 인력 운영시 만점 / 미운영시 0점) | 5점 | 5점 | - | 1.25점 | |
| | - 재난방송 대응시스템 구축여부 (시스템 구축시 만점 / 미구축시 0점) | 5점 | 5점 | - | 1.25점 | |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 |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 5점 | 5점 | - | 1.25점 | |

(*)지상파 TV 6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7/6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지상파 TV 6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3/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재해)에 의거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집행계획) 제3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등) 제2항에 의거,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경우 종합편성사업자에 한함(EBS 제외).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재난방송의 편성실적이라 함은 재난발생시 혹은 재난발생 전후 편성한 속보/특보 등의 특집프로그램의 총 편성시간량을 의미함 (수중계 프로그램의 편성량과 자막방송 건수도 편성실적으로 인정)
- 재난피해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실적(홈쇼핑PP 제외)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제작/방영된 캠페인 등을 의미함
 - ※ 재난관련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모든 다큐멘터리는 재난방송 편성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는 전임 또는 겸임(재난방송 업무와 타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으로 재난방송 업무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임.
- 재난방송 대응시스템 구축여부는 기상청이나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재난방송요청정보를 자동적으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여부에 대한 평가임.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은 재난방송 매뉴얼 교육 및 재난 예방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직원교육 실적을 교육 시간량에 의거하여 평가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정한 교육은 보도국이나 관련 부서 등 일부가 참가한 교육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온라인 강의실적 제외)
 - 외부기관이 지정한 교육 프로그램에 직원을 참여시키거나 전문 강사의 초청간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할 경우도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 ※ 민방위 비상소집, 예비군 종합방호훈련 등 재난방송의 제작·편성 또는 송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직장 내에서의 비상훈련은 인정하지 않음.

※ 방송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재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또는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밖에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재해)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 적용시점 : '14년 방송실적을 평가하는 '15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R/DMB),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위성DMB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지상파 TV | 지상파 R | 보도PP | 홈쇼핑PP | 지상파 / 위성 DMB | 종편 PP |
|---------------|---|--------|--------|--------|-------|--------------|---------|
| | | 60점 | 70점(*) | 70점(*) | 10점 | 10점 | 65점(**) |
|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 - 재난방송의 편성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 20점 | 23점 | 20점 | 5점 | 3.15점 | * |
| | - 재난피해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 20점 | 22점 | 20점 | - | 3.1점 | * |
| | - 재난방송 실시율에 대한 5등급 평가 | 5점 | - | 5점 | - | - | * |
| 재난방송 매뉴얼의 적정성 | - 자체 제작된 재난방송 매뉴얼 마련 여부 (매뉴얼 마련시 만점 / 없는 경우 0점) | 5점 | 5점 | 5점 | 5점 | 1.25점 | * |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 (관련 인력 운영시 만점 / 미운영시 0점) | 5점 | 5점 | 5점 | - | 1.25점 | * |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 |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 5점 | 5점 | 5점 | - | 1.25점 | * |

(*)지상파 TV 6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7/6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지상파 TV 6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13/12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재해)에 의거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집행계획) 제3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등) 제2항에 의거,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경우 종합편성사업자에 한함(EBS 제외).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재난방송의 편성실적이라 함은 재난발생시 혹은 재난발생 전후 편성한 속보/특보 등의 특집프로그램의 총 편성시간량을 의미함 (수중계 프로그램의 편성량과 자막방송 건수도 편성실적으로 인정)

○ 재난피해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실적(홈쇼핑PP 제외)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제작/방영된 캠페인 등을 의미함

※ 재난관련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모든 다큐멘터리는 재난방송 편성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재난방송 실시율이라 함은 재난방송 종합메뉴얼에 따라 3단계 이상 재난 상황에 대한 방송요청 대비 재난방송을 실시한 비율을 의미함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는 전임 또는 겸임(재난방송 업무와 타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으로 재난방송 업무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임.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은 재난방송 매뉴얼 교육 및 재난 예방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직원교육 실적을 교육 시간량에 의거하여 평가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정한 교육은 보도국이나 관련 부서 등 일부가 참가한 교육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온라인 강의실적 제외)

- 외부기관이 지정한 교육 프로그램에 직원을 참여시키거나 전문 강사의 초청간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할 경우도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 민방위 비상소집, 예비군 종합방호훈련 등 재난방송의 제작·편성 또는 송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직장 내에서의 비상훈련은 인정하지 않음.

※ 방송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재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또는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밖에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재해)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자체편성 50%이상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TV)인 KBS, MBC, SBS, OBS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배점 |
|-------------------------|-----|
|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TV-중앙) | 60점 |

다. 평가점수 산정 기준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2항에서 규정한 보도, 교양, 오락의 편성항목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3항에서 명시된 지정 시간대에서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평가함.
- '주시청시간대'라 함은 방송법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제3항에 의거, 평일은 오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로 함.
- '오락 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법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제2항에 의거,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 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하며, 동조 제8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따른다. 방송프로그램 분류기준 고시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전 세부기준을 따른다
-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실적 9등급으로 평가

| | | | | | | | | | |
|------------|-----------|-----------------------|-----------------------|-----------------------|-----------------------|-----------------------|-----------------------|---------------------|-----------|
| 오락편성 비율 | 60% 미만 | 61.5%미만 ~ 60%이상 | 63%미만 ~ 61.5%이상 | 64.5%미만 ~ 63%이상 | 66%미만 ~ 64.5%이상 | 67.5%미만 ~ 66%이상 | 69%미만 ~ 67.5%이상 | 70%미만 ~ 69%이상 | 70% 이상 |
| 지상파TV | 60점 | 52.5점 | 45점 | 37.5점 | 30점 | 22.5점 | 15점 | 7.5점 | 0점 |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②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 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 ③ 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평가

가. 평가대상

- 자체편성 50% 미만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TV)인 KBS-1TV 지역총국, 지역MBC-TV, 지역민방-TV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배점 |
|-------------------------|-----|
|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평가(TV-지역) | 6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평가함.
 - KBS-1 지역총국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 MBC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민방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방송사(총국)가 자체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하나 지역방송사(총국)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도 포함함.
- 자체제작 프로그램 산정시 포함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범위는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를 충족시키는 공동제작 프로그램 편성시간량을 자체제작물 편성시간으로 산입함.
- 양질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 장려를 위하여 전국에 방송된 지역 자체제작물 또는 지역 공동제작물은 편성시간의 50%를 가산하여 인정함.
- 지역 자체제작물 편성시간으로 산정되는 지역 공동제작물의 경우도 전국에 방송되었을 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함.

○ KBS 지역총국(KBS-1TV)의 배점 기준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 | | | | | | | | |
|--------------------------|-----------|-----------------------|------------------------|------------------------|----------------------|----------------------|------------------------|------------------------|-------------|
| 자체제작 비율 | 10% 이상 | 10%미만 ~ 8.75%이상 | 8.75%미만 ~ 7.5%이상 | 7.5%미만 ~ 6.25%이상 | 6.25%미만 ~ 5%이상 | 5%미만 ~ 3.75%이상 | 3.75%미만 ~ 2.5%이상 | 2.5%미만 ~ 1.25%이상 | 1.25% 미만 |
| KBS 지역총국 (KBS-1TV) | 60점 | 52.5점 | 45점 | 37.5점 | 30점 | 22.5점 | 15점 | 7.5점 | 0점 |

○ 지역 MBC-TV의 배점 기준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 | | | | | | | | |
|--------------|-----------|------------------------|---------------------------|--------------------------|------------------------|------------------------|-------------------------|-------------------------|-------------|
| 자체제작 비율 | 15% 이상 | 15%미만 ~ 13.12%이상 | 13.12%미만 ~ 11.25%이상 | 11.25%미만 ~ 9.37%이상 | 9.37%미만 ~ 7.5%이상 | 7.5%미만 ~ 5.62%이상 | 5.62%미만 ~ 3.75%이상 | 3.75%미만 ~ 1.87%이상 | 1.87% 미만 |
| 지역 MBC-TV | 60점 | 52.5점 | 45점 | 37.5점 | 30점 | 22.5점 | 15점 | 7.5점 | 0점 |

○ 지역 민방TV의 배점 기준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 | | | | | | | | |
|------------|-----------|-----------------------|-----------------------|-----------------------|-----------------------|----------------------|---------------------|---------------------|------------|
| 자체제작 비율 | 20% 이상 | 20%미만 ~ 17.5%이상 | 17.5%미만 ~ 15%이상 | 15%미만 ~ 12.5%이상 | 12.5%미만 ~ 10%이상 | 10%미만 ~ 7.5%이상 | 7.5%미만 ~ 5%이상 | 5%미만 ~ 2.5%이상 | 2.5% 미만 |
| 지역 민방TV | 60점 | 52.5점 | 45점 | 37.5점 | 30점 | 22.5점 | 15점 | 7.5점 | 0점 |

직접제작 · 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나. 배점방식

| 편성비율 | SO, 위성방송 |
|--------------------|----------|
| | 20점 |
| 90% 이상 | 20점 |
| 80% 이상 ~ 90% 미만 | 15점 |
| 70% 이상 ~ 80% 미만 | 10점 |
| 60% 이상 ~ 70% 미만 | 5점 |
| 60% 미만(녹음 및 녹화 채널) | 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직접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개념 정의
 - 직접제작 프로그램 : 해당 방송사업자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 외주제작 프로그램 :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정의는 방송법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1항의 기준을 따름
- 직접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실적을 기준으로 5등급 평가
-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는 편성비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배점하되, 직접사용채널이 2개 이상일 경우, 채널별 만점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널 점수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채널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산정함.
-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지역채널의 액세스(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가. 평가대상

- SO

나. 배점방식

| 세부기준 | 배점 |
|----------------------------------|-----|
| | 10점 |
| -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표1> 참조) | 5점 |
| -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표2> 참조) | 5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액세스 프로그램 개념 정의
 - 액세스(시청자참여) 프로그램 : 방송제작을 업(業)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하여 방송된 프로그램
- 액세스 프로그램을 SO간에 교환한 경우 편성실적으로 100% 인정함.
(교환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프로그램 편성을 배제하고 시간을 할애한 점을 인정)
- 액세스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 비영리법인이 제작하지 않은 시정뉴스나 선관위 제작 프로그램, 관내소식 등은 인정하지 않음.

<표1>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에 따른 5등급 평가

|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 | 평가점수 |
|---------------|------|
| 5% 이상 | 5점 |
| 3% 이상 ~ 5% 미만 | 4점 |
| 1% 이상 ~ 3% 미만 | 3점 |
| 1% 미만 | 2점 |
| 미편성시 | 0점 |

<표2>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평가

|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 평가점수 |
|-----------------|------|
| 노력 평가 우수 | 5점 |
| 보통 | 2.5점 |
| 미흡 | 0점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SO

나. 배점방식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실적 | 배점 |
|-------------------|-----|
| | 20점 |
| 80% 이상 | 20점 |
| 60% 이상 ~ 80% 미만 | 15점 |
| 40% 이상 ~ 60% 미만 | 10점 |
| 20% 이상 ~ 40% 미만 | 5점 |
| 20% 미만 | 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범위는 방송법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제3항 제2, 3, 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채널의 운용 등) 제3항에 의거함.

※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 ③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채널의 운용 등)

- ③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금지한다.
 1. 당해 방송구역 내의 지역보도 프로그램 및 주민 생활 정보 프로그램
 2. 당해 방송구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보도프로그램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 중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정보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종편PP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배점 |
|---------------|---------------------------|-----|
| 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 | 3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실적은 전체 편성시간 중 제작(자체+외주) 프로그램 편성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며, 최고 실적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

<표1>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평가

| 평가등급의 비율 | 평가점수 |
|-------------------|------|
| 87.5% 이상 | 30점 |
| 75% 이상 ~ 87.5% 미만 | 27점 |
| 62.5% 이상 ~ 75% 미만 | 24점 |
| 50% 이상 ~ 62.5% 미만 | 21점 |
| 37.5% 이상 ~ 50% 미만 | 18점 |
| 25% 이상 ~ 37.5% 미만 | 15점 |
| 12.5% 이상 ~ 25% 미만 | 12점 |
| 12.5% 미만 | 9점 |
| 0% | 6점 |

시청자정보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배점 |
|--------------------------|-----|
| 시청자정보프로그램 편성 평가(<표1> 참조) | 1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개념 정의

-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비수익적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건강정보 프로그램',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

※ 직·간접적인 상품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편성실적에서 제외

- 월간 단위로 편성되는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편성실적으로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표1>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편성시간(월간)에 따른 5등급 평가

| 시청자 정보프로그램 편성시간 | 평가점수 |
|-----------------|------|
| 90분 이상 | 10점 |
| 60분 이상 ~ 90분 미만 | 7.5점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점 |
| 30분 미만 | 2.5점 |
| 미편성시 | 0점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DMB-TV, 지상파DMB-R, 위성DMB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지상파 DMB-TV/R | 위성DMB |
|-----------------------|-----------------|-------|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평가 | 60점 | 5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개념 정의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 방송용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중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에서 처음으로 방송된 프로그램
- 지상파 방송용으로 제작돼 수중제한 프로그램은 제외함.
- 케이블 등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해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처음으로 방송된 프로그램 포함
- 매체별(지상파DMB TV, 위성DMB TV, 지상파DMB 라디오)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 2개 이상일 경우, 채널별 만점(60점)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널 점수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채널 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산정함.

<표1> DMB용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5등급 평가(지상파DMB)

| 구분 | 평가등급의 비율 | 평가점수 |
|--------------------|---------------|------|
| 지상파DMB TV/R(60) | 75%이상 | 60점 |
| | 50%이상 ~ 75%미만 | 50점 |
| | 25%이상 ~ 50%미만 | 30점 |
| | 25%미만 | 20점 |
| | 0% | 10점 |

<표2> DMB용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따른 5등급 평가(위성DMB)

| 구분 | 평가등급의 비율 | 평가점수 |
|-----------------|---------------|------|
| 위성DMB TV(50) | 75%이상 | 50점 |
| | 50%이상 ~ 75%미만 | 40점 |
| | 25%이상 ~ 50%미만 | 30점 |
| | 25%미만 | 20점 |
| | 0% | 10점 |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지상파 TV/R, SO, 위성방송, 보도PP, 종편PP, 지상파/위성 DMB | 홈쇼핑PP |
|---|---|-------|
|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의 4개 재무비율에 대해 5등급 평가 | 30점 | 1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의 4개 재무비율에 대해 지상파 TV/R, SO, 위성방송, 보도PP, 지상파/위성 DMB, 종편PP는 각 7.5점씩 총 30점 배점하고, 홈쇼핑PP는 각 2.5점씩 총 10점 배점함.
- 해당 연도 1개년도의 재무비율만을 평가대상으로 함(단, 증가율의 경우 전년도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무비율을 평가대상으로 함).
- 4개 재무비율 산정 방식: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전 산업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σ)를 구하고, 평균 ± 0.5 , 1 표준편차에 따른 구간별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함. 이에 따라 지상파TV/R, SO, 위성방송, 보도PP, 지상파/위성 DMB, 종편PP는 점수배점 구간을 5개 구간(7.5점, 6점, 4.5점, 3점, 1.5점)으로 나누고, 홈쇼핑PP는 5개 구간(2.5점, 2점, 1.5점, 1점, 0.5점)으로 나누어 평가함.

내부 감사 및 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지상파TV | 지상파R, SO, 위성방송, 보도PP, 지상파/위성 DMB | 홈쇼핑PP | 종편PP |
|-------------------------|-------|---|--------|----------|
| 내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10점) | 25점 | 20점(*) | 15점(*) | 22.5점(*) |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15점) | | | | |

(*) 지상파TV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지상파R, SO, 위성방송, 보도PP, 지상파/위성 DMB는 4/5, 홈쇼핑PP는 3/5, 종편PP는 9/10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내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10점)

| | 세부 항목 | 내용 | 배점 |
|---|--|---|----|
| 1 |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 |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을 정관에서 3% 미만으로 낮추고 있는 경우 | +1 |
| 2 | 감사의 수 | 감사위원회 설치 또는 상근감사 있음 | 2 |
| | | 감사위원회 미설치, 상근감사 없음 | 0 |
| 3 | 감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 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직무와 겸직 여부 | 직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음 | 2 |
| | | 직무를 겸직하고 있음 | 0 |
| | | ※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만점으로 함 | |
| 4 | 감사가 보유한 주식수와 지분율(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감사 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 |

| | 세부 항목 | 내용 | 배점 |
|---|---------------------------|-----------------|----|
| 5 | 내부감사실 운영 여부 및 내부감사실의 조직구성 | 내부감사실 운영 | 2 |
| | | 내부감사실 미운영 | 0 |
| 6 | 감사의 주요 업무경력 |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음 | 2 |
| | | 업무경력이 충분하지 않음 | 1 |
| 7 |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중 부적격자 여부 | 부적격자가 없음 | 2 |
| | | 부적격자가 있음 | 0 |

(*) 방송법 또는 감사업무 경력 5년 이상에 준하는 업무경력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15점)

| | 세부 항목 | 세부 배점방식 | |
|---|--|---|------|
| | | 내용 | 배점 |
| 1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의견 거절 | -15점 |
| | | 부적정 의견 | -10점 |
| | | 한정 의견(감사범위제한 또는 기업회계기준 위배) | -5점 |
| 2 |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 | “검토범위의 중요한 제한” | -15점 |
| | | “경영자의 보고가 적절하지 아니함” | -10점 |
| | | “검토범위의 일부 제한” | -5점 |
| | | “경영자의 보고에 중요한 취약점이 일부 누락됨” | -3점 |
| | | “경영자의 중요한 취약점을 적절하게 보고함” | -2점 |
| | | ※ 검토보고서 첨부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 |
| 3 | 내부회계 관리규정 마련 여부 | 내부회계 관리규정 있음 | 2점 |
| | | 없음 | 0점 |
| 4 | 내부회계 관리자 | ① 내부회계 관리자 지정(근거문서 제출) | 1점 |
| | | 내부회계 관리자 없음 | 0점 |
| | | ② 상근임원 | 1점 |
| | | 내부회계 관리자 없음 | 0점 |
| 5 |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한 횟수 | 연간 2회 이상 | 2점 |
| | | 연간 1회 | 1점 |
| | | 보고하지 아니함 | 0점 |
|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1회 이상 보고할 경우 만점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기본점수 1점으로 평가함 | |

| | 세부 항목 | 세부 배점방식 | |
|---------|---|---|-------|
| | | 내용 | 배점 |
| 6 | 감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횟수 | 연간 1회 | 2점 |
| | | 보고하지 않음 | 0점 |
|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1회 이상 보고할 경우 만점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기본점수 1점으로 평가함 | |
| 7 |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윤리강령(정책) 확립 및 윤리강령이 임직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내부회계 관리제도 윤리강령 위반시 조치내용 | ①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윤리강령(정책) 확립 | 1점 |
| | | 윤리강령 없음 | 0점 |
| | | ② 전달수단이 2가지 이상 | 0.5점 |
| | | 전달수단 1가지 | 0.25점 |
| | | 전달수단 없음 | 0점 |
| | | ③ 인사 관련 조치 포함 | 0.5점 |
| | | 인사 관련 조치 미포함 | 0.25점 |
| 조치내용 없음 | 0점 | | |
| 8 | 업무분장 관련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담당자, 정의, 승인권한, 업무절차 등) | 누락된 세부항목 없이 문서에 의하여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 | 2점 |
| | | 누락된 세부항목 1개 | 1.5점 |
| | | 누락된 세부항목 2개 | 1점 |
| | | 누락된 세부항목 3개 이상 | 0.5점 |
| | |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음 | 0점 |
| 9 | 재무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백업하는 절차 | 월간 단위 | 2점 |
| | | 분기 단위 | 1점 |
| | | 반기 단위 | 0.5점 |
| | | 백업 절차 없음 | 0점 |
| 10 |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됨 | 1점 |
| | |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에 의하여 수행됨 | 0.5점 |
| | | 모니터링 실시하지 않음 | 0점 |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함

**경영진의 비전과 조직관리 능력을 포함한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지상파TV | 지상파R, SO, 위성방송, 보도PP, 지상파/위성 DMB | 홈쇼핑PP | 종합PP |
|-----------------------------|-------|--|-------|------|
| | | 25점 | 20점 | 15점 |
| 경영진 또는 회사의 비전과 조직관리 계획 수립여부 | 12점 | 9점 | 6점 | |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 13점 | 11점 | 9점 | |

(*)종합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9/10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경영진 또는 회사의 비전과 조직관리 계획 수립여부

| 구분 | 내용 | 지상파TV | 지상파R, SO, 위성방송, 보도PP, 지상파/위 성DMB | 홈쇼핑PP |
|--------------------------------------|--|-------|---|-------|
| 경영진 또는 회사의 비전과 조직관리계획 수립 여부 | 비전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음 | 8점 | 6점 | 4점 |
| | 비전이 수립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없음 | 4점 | 3점 | 2점 |
| | 비전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함 | 0점 | 0점 | 0점 |
| | 조직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음 | 4점 | 3점 | 2점 |
| | 조직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함 | 0점 | 0점 | 0점 |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함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 구분 | 내용 | 지상파TV | 지상파R, SO, 위성방송, 보도PP, 지상파/위 성DMB | 홈쇼핑PP | |
|----------------------------|---|-------|---|-------|--|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과 충분성 | 비전이 공시되어 있음 | 4점 | 4점 | 3점 | |
| | 비전이 공시되어 있지 않음 | 0점 | 0점 | 0점 | |
| | 조직관리계획이 공시되어 있음 | 4점 | 4점 | 3점 | |
| | 조직관리계획이 공시되어 있지 않음 | 0점 | 0점 | 0점 | |
| | ① 감사보고서일까지의 기간 | | | | |
| | 60일 이하 | 0.75 | 0.5 | 0.5 | |
| | 60일 초과 90일 이하 | 0.4 | 0.3 | 0.3 | |
| | 90일 초과 | 0 | 0 | 0 | |
| | ② 감사보고서 공시일까지의 기간 | | | | |
| | 75일 이하 | 0.75 | 0.5 | 0.5 | |
| | 75일 초과 105일 이하 | 0.4 | 0.3 | 0.3 | |
| | 105일 초과 | 0 | 0 | 0 | |
| | ③ 다음 항목 중 공시된 사항에 대하여 지상파TV 0.6점, 지상파R(단 재단법인 0.5점), SO, 위성방송, 보도PP, 지상파/위성 DMB, 홈쇼핑PP 0.3점씩 부여 - ①회사 개황, ②5% 이상의 주요 주주, ③경영환경/경영정책/산업동향 등에 관한 내용, ④주요 재무사항, ⑤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 (총 5개 항목) - 재단법인의 경우 ①회사 개황, ②주요 재무사항, ③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 등 총 3개 항목만 평가 - 주요 재무사항,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 | | | | |
| | ④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기재 | | | | |
| | 특수관계자 미기재 | 0 | 0 | 0 | |
|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없어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제외 | | | | |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지상파TV | 지상파R,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지상파/위성 DMB | 종편PP |
|-----------------------------|---|-------|--|---------|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 |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에 대한 5구간 평가(10점) | 30점 | 20점(*) | 25점(**) |
| 1인당 교육비 | - 전체 교육비 대비 인원수를 나눠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여 5구간 평가(10점) | | | |
| 직무와 연관있는 교육에 대한 평가 | - 직무능력 향상 교육의 실시 여부 - 직무능력 향상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한 5구간 평가(5점) - 교육참여도, 성취도에 대한 평가와 보상 여부에 대한 평가(5점) | | | |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2/3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5/6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10점)

- 각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을 산출하여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위성DMB,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X0.5)의 구간을 5개 구간(10점, 8점, 6점, 4점, 2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 1인당 교육비(10점)

- 전체 교육비 대비 인원수를 나눠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여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위성DMB,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X0.5)의 구간을 5개 구간(10점, 8점, 6점, 4점, 2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 직무능력 향상 교육시간(5점)

- 직무능력 향상 교육의 실시 여부 : 총 1점(실시 1점, 미실시 0점)
-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시간(연 평균) : 총 4점
: 각 사업자의 직무능력 향상 관련 교육 시간을 파악하여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위성DMB,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에 대하여 각기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X0.5)의 구간을 5구간(4점, 3.2점, 2.4점, 1.6점, 0.8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 교육참여도, 성취도에 대한 평가와 보상 여부(5점)

- 평가와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5점 둘 중 하나만 이루어지면 3점, 둘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1점을 배점함.

방송기술 투자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지상파 TV | 지상파R,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지상파/위성 DMB | 종편PP |
|--|--|--------|---|--------|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인증제품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우수도)에 대한 5등급 평가(10점) - 전년도의 감가상각비 대비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향상도)에 대한 5등급 평가(10점) -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 대비 방송관련 신기술 투자액(기여도)에 대한 5등급 평가(5점) - 해당연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대비 'TTA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및 방송장비규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제품 투자액에 대한 5등급 평가(5점) | 30점 | 20점(*) | 25점(*) |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종편PP를 제외한 매체는 그 점수에 2/3를, 종합편성 PP는 5/6을 곱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우수도 :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10점)
 -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을 구한 후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위성DMB)에 대하여 각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0.5)의 구간을 총 5개로 배열하여 평가함

○ 향상도 : 전년도의 감가상각비 대비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 비율(10점)

- 해당 연도 (t)의 감가상각비를 이전 연도 (t-1)의 감가상각비로 나눈 값을 구한 후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위성DMB)에 대하여 각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 \pm 3 \times 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times 0.5)의 구간을 총 5개로 배열하여 평가함

○ 기여도 :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 대비 방송관련 신기술 투자액 비율(5점)

- 감가상각비 대비 방송관련 신기술 투자액 비율을 구한 후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위성DMB)에 대하여 각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 \pm 3 \times 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times 0.5)의 구간을 총 5개로 배열하여 평가함

○ 해당연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액 비율(5점)

-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액 비율을 구한 후 지상파 사업자 그룹과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위성DMB)에 대하여 각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되,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 \pm 3 \times 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times 0.5)의 구간을 총 5개로 배열하여 평가함.

- 인증제품은 “TTA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 및 “방송장비규격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제품을 가리키며, 컨버터, STB 등 수신 장비는 투자액에서 제외함(ETRI의 ‘방송장비 분류체계’ 준용)

- “방송장비규격심사위원회”는 정부, 방송사, 학계, 연구계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방송사 투자 장비에 대한 발주규격 등의 심의 및 인증투자액 반영 여부를 결정하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과(전파방송관리과)에 소속

- 인증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 방송장비에 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 을 중소기업으로 설정

장애인 고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세부기준 | 배점 |
|--|-----|
| - 장애인고용비율(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을 산출하여 5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 | 1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장애인고용비율의 산정

- 해당 연도 1개년도의 장애인 고용비율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 장애인고용비율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상시근로자수)
- 상시 근로자수 대비 2.5% 이상 장애인 고용시 10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며, 그 다음부터 0.5% 간격으로 5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함.

-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방송사업자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신고서상의 월평균 상시 근무자수를 기준으로 함.
-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자(법인기준의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 항목 평가를 제외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자(법인기준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만점을 부여함.

- 세부 배점

| 기준 | 2.5%이상 | 2.0%이상 ~ 2.5%미만 | 1.5%이상 ~ 2.0%미만 | 1.0%이상 ~ 1.5%미만 | 0.5%이상 ~ 1.0%미만 | 0.5%미만 |
|----|--------|-----------------|-----------------|-----------------|-----------------|--------|
| 배점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0점 |

-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4.1.29)에 의거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자 기준이 상시근로자수 300인에서 50인으로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자 중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0점을 받게 됨.

여성 고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세부기준 | 배점 |
|--|-----|
| - 여성고용비율(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을 산출하여 5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 | 1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여성고용비율의 산정
 - 해당 연도 1개년도의 여성고용비율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 여성 종업원수를 평균 종업원수로 나누어서 구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중치는 80% : 20%로 함.

$$\text{연도별 여성고용비율} = \frac{\text{여성 정규직 종업원수} \times 80\% + \text{여성 비정규직 종업원수} \times 20\%}{\text{정규직 종업원수} \times 80\% + \text{비정규직 종업원수} \times 20\%}$$

- 지상파(TV, R, DMB)의 경우 지상파 사업자 그룹(지상파 TV/R/DMB)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평균 ± 0.6, 1.2 값을 구해 총 5개 배점구간으로 나누어 10점에서 2점까지 구분하여 평가함.
- SO, 위성방송, 위성DMB,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의 경우 비지상파 사업자 그룹(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종편PP, 위성DMB)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평균 ± 0.6, 1.2 값을 구해 총 5개 배점구간으로 나누어 10점에서 2점까지 구분하여 평가함.

- 정규직의 요건

- (1) 인사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었을 것
- (2)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 (3) 전일제 근로조건(주당 36시간 이상 근무)일 것
- (4) 계속근무가능자일 것

(*) 계속근무가능자 : 계속근무불가능자가 아닌 자

계속근무불가능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으로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없이도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자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배점 |
|----------------|-----|
|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 | 3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감점내역

| 사업자별 배점 | 경고 | 과태료 | 시정명령 | 과징금 | 고발 |
|---------|----|-----|------|-----|-----|
| 감점 | 2점 | 4점 | 8점 | 10점 | 15점 |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배점 |
|----------------------|-----|
|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평가 | 3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감점내역

| 구분 | 과태료 | 시정명령 | 과징금(*) | |
|----|-----|------|---------|---------|
|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 감점 | 4점 | 8점 | 10점 | 15점 |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평가

* 적용시점 : '14년 방송실적을 평가하는 '15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배점 |
|----------------------|-----|
|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평가 | 4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감점내역

| 구분 | 과태료 | 시정명령 | 과징금(*) | |
|----|-----|------|---------|---------|
|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 감점 | 4점 | 8점 | 10점 | 15점 |

(*)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제재조치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감점을 유예하고 소송이 완료된 이후 방송평가에 결과를 반영함.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구분 | 배점 |
|--|-----|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 10점 |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 10점 |

※ 지상파 라디오 및 지상파DMB 라디오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여부>만 평가하여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 구분 | 내용 | 배점 | |
|--|--------------------------------------|------------|----|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 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 | 수립됨 | 3점 |
| | |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점 |
| | ②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세부실행계획 수립 여부 | 우수함 | 7점 |
| | | 미흡함 | 4점 |
| | |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점 |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 구분 | 내용 | 배점 | |
|--|-------------------------|-----------------------|------------|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 ① 세부실행계획의 달성정도 | 우수 | 3점 |
| | | 미흡 | 1.5점 |
| | | 실시하지 않음 | 0점 |
| | ② 세부실행계획 실시에 대한 평가 여부 | 실시함 | 2점 |
| | | 실시하지 않음 | 0점 |
| | ③ 세부실행계획 실시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 평가의 지표가 적절하게 계량화되어 있음 | 3점 |
| | | 평가의 계량화 지표가 미흡함 | 2점 |
| | | 계량화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점 |
| | | 평가하지 않음 | 0점 |
| | | 평가에 의한 피드백 여부 | 세부실행계획에 반영 |
| | | 세부실행계획에 미반영 | 0점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적용시점 : '14년 방송실적을 평가하는 '15년 방송평가부터 적용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구분 | 배점 |
|--|----|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 5점 |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 5점 |

※ 지상파 라디오 및 지상파DMB 라디오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여부>만 평가하여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 구분 | 내용 | 배점 | |
|--|--------------------------------------|------------|------|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 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 | 수립됨 | 1.5점 |
| | |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점 |
| | ②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세부실행계획 수립 여부 | 우수함 | 3.5점 |
| | | 미흡함 | 2점 |
| | |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점 |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 구분 | 내용 | 배점 | |
|--|-------------------------|-----------------------|------|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 ① 세부실행계획의 달성정도 | 우수 | 1.5점 |
| | | 미흡 | 1점 |
| | | 실시하지 않음 | 0점 |
| | ② 세부실행계획 실시에 대한 평가 여부 | 실시함 | 1점 |
| | | 실시하지 않음 | 0점 |
| | ③ 세부실행계획 실시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 평가의 지표가 적절하게 계량화되어 있음 | 1.5점 |
| | | 평가의 계량화 지표가 미흡함 | 1점 |
| | | 계량화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0.5점 |
| | | 평가하지 않음 | 0점 |
| | ④ 평가에 의한 피드백 여부 | 세부실행계획에 반영 | 1점 |
| 세부실행계획에 미반영 | | 0점 | |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지상파 TV | 지상파R, SO, 위성방송, 보도PP, 지상파DMB, 위성DMB | 홈쇼핑 PP | 종편 PP |
|-----------------------------|-------------------------------------|--------|-------------------------------------|--------|--------|
| | | 30점 | 20점 | 30점 | 25점(*) |
|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여부 | -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처리결과 (<표1> 참조) | 15점 | 10점 | 10점 | * |
| 방송사의 시청자불만처리 전담부서 운영 | - 전담부서 설치시 만점/ 미설치시 0점 | 3.75점 | 2.5점 | 2.5점 | * |
| | - 야간 및 주말 민원접수 시스템 구축시 만점/ 미구축시 0점 | 3.75점 | 2.5점 | 2.5점 | * |
|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 절차의 효율성 정도 | - 시청자불만처리율 (<표2> 참조) | 3.75점 | 2.5점 | 2.5점 | * |
| | - 시청자 피드백 시스템 구축시 만점/ 미구축시 0점 | 3.75점 | 2.5점 | 2.5점 | * |
| 소비자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 | - 소비자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에 따른 평가 (<표3> 참조) | - | - | 10점 | |

(*)종편PP 점수 산정 방식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5/6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여부’는 방송법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따른 시청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감점 처리

<표1>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처리결과' 매체별 평가기준과 점수산정 기준

| 매체별 평가항목 | 세부항목(감점기준) |
|--|---|
| 지상파방송(TV)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처리결과 (15점) | - 주의 1건당 1점 - 경고 1건당 2점 -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당 4점, 병과 시 6점 - 시정명령 1건당 8점 감점 - 과징금부과 1건당 10점 |
| 지상파방송(R),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지상파/위성 DMB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처리결과 (10점) | - 주의 1건당 1점 - 경고 1건당 2점 -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당 4점, 병과 시 6점 - 시정명령 1건당 8점 감점 - 과징금부과 1건당 10점 |

○ '방송사의 불만처리 효율성' 평가는 전담부서 설치여부와 불만접수 및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함.

<표2>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율에 따른 점수배점

| 효율성 평가 | 시청자불만처리율 90% 이상 | 시청자불만처리율 80% 이상 ~ 90% 미만 | 시청자불만처리율 80% 미만 |
|--|--------------------|-----------------------------|--------------------|
| 지상파 TV | 3.75점 | 2.5점 | 1.25점 |
| 지상파방송(R), SO, 위성방송, 보도PP, 홈쇼핑PP, 지상파/위성 DMB | 2.5점 | 1.5점 | 0.75점 |

<표3> 소비자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에 따른 점수배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분야) | |
|------------------|-----|
| 소비자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 | 점수 |
| 없음 | 10점 |
| 1건이상 3건이하 | 9점 |
| 4건이상 6건이하 | 8점 |
| 7건이상 9건이하 | 7점 |
| 10건이상 12건이하 | 6점 |
| 13건이상 15건이하 | 5점 |
| 16건이상 18건이하 | 4점 |
| 19건이상 21건이하 | 3점 |
| 22건이상 24건이하 | 2점 |
| 25건이상 27건이하 | 1점 |
| 28건이상 | 0점 |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가. 평가대상

-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전체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지상파TV, 홈쇼핑PP | 지상파R, SO, 위성방송, 보도PP, 지상파/위성 DMB | 총편PP |
|------------------|-----------------|--|---------|
|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평가 | 30점 | 20점(*) | 25점(**) |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2/3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지상파TV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5/6을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 구분 | 배점 | 배점 | |
|-------------------------|--------------------|---------------------|----|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전문성(6점) |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 지정 | 3점 |
| | | 미지정 | 0점 |
| |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적격성 | 적격 | 3점 |
| | | 미적격 | 1점 |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수립 및 공개(12점) | 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수립여부 | 수립 | 1점 |
| | | 미수립 | 0점 |
| | ② 개인정보의 취급목적 |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 2점 |
| | |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않음 | 1점 |
| | | 수립되지 않음 | 0점 |
| | ③ 개인정보의 취급 및 보유 기간 |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 2점 |
| | |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않음 | 1점 |
| | | 수립되지 않음 | 0점 |

| 구분 | 배점 | 배점 | |
|-------------------------------------|------------------------------------|----------------------|-------------------|
| |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 되는 경우)(*) |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 2점 |
| | |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아니함 | 1점 |
| | | 수립되지 아니함 | 0점 |
| | ⑤ 개인정보취급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 되는 경우)(*) |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 2점 |
| | |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아니함 | 1점 |
| | | 수립되지 아니함 | 0점 |
| | ⑥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수립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음 | 2점 |
| | | 수립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아니함 | 1점 |
| | | 수립되지 아니함 | 0점 |
| | ⑦ 개인정보 취급방안의 변경시 공개여부 | 공개 또는 미변경 | 1점 |
| | | 변경시 미공개 | 0점 |
| | 개인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수행여부(6점) | ① 개인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수립되었으며 시행되고 있음 |
|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음 | | | 1점 |
| 수립되지 아니함 | | | 0점 |
| ②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 구축됨 | 2점 |
| | | 구축되지 아니함 | 0점 |
| ③ 개인정보 관리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수립되었으며 시행되고 있음 | 2점 |
| |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음 | 1점 | |
| | 수립되지 아니함 | 0점 | |
| 개인정보 관리 실태(6점) | ①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절차의 적절성 | 암호화 절차가 적절함 | 2점 |
| | | 암호화절차가 미흡함 | 1점 |
| | | 암호화절차가 수립되지 아니함 | 0점 |
| | ②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정보주체 동의 절차의 적절성 | 동의 절차가 적절함 | 2점 |
| | | 동의 절차가 미흡함 | 1점 |
| | | 동의 절차가 수행되지 아니함 | 0점 |
| |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의 적절성 | 파기 절차가 적절함 | 2점 |
| | | 파기 절차가 미흡함 | 1점 |
| | | 파기 절차가 수행되지 아니함 | 0점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 후, 매체별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함.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위성DMB

나. 배점방식

| 세부기준 | 배점 |
|---|----|
| - 수신료 매출액 대비 수신료 PP 배분액 비율을 산출하여 5구간으로 나누어 평가 | 25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해당 연도의 수신료 매출액 대비 수신료 PP 배분액 비율을 산출하고 평균(M) 및 표준편차(σ)를 산출하여 5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를 배점함.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위성DMB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배점 |
|--|--------------------------|-----|
| | | 25점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신규채널계약이나 기존채널 재계약시 객관적 선정기준유무 및 선정기준의적정성 | - 채널공급 계약시 문서화된 선정기준의 유무 | 4점 |
| | - 채널공급 선정기준의 공개여부 | 3점 |
| |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여부 | 3점 |
| |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 | 2점 |
| | - 가입자 채널평가 결과 반영 여부 | 3점 |
| | - 방송통신위원회 제재현황 반영 여부 | 2점 |
| | - 각종 상벌 반영 여부 | 1점 |
| | - 채널선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 3점 |
| | - 무료계약 여부 | 4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신규채널 계약이나 기존 채널 재계약시 객관적 선정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 세부 배점방식

| | 세부 항목 | 세부 배점방식 | 배점 |
|---|------------------------|----------------------------------|----|
| 1 | 채널공급 계약시 문서화된 선정기준의 유무 | ① 선정기준 있음 : 4점, 없음 : 0점 | 4점 |
| 2 | 채널공급 선정기준의 공개여부 | ① 공개 : 3점, 요청시 공개 : 2점, 비공개 : 0점 | 3점 |

| | 세부 항목 | 세부 배점방식 | 배점 |
|---|--------------------|--|----|
| 3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여부 | ①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없음 : 3점 ②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이유가 기존계약서에 명시됨 : 3점 그 이유가 기존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 0점 | 3점 |
| 4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 | 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없음: 2점 ②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기존계약서에 명시됨 : 2점 그 이유가 기존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 0점 | 2점 |
| 5 | 가입자 채널평가 결과 반영 여부 | ① 채널 계약 선정기준에 가입자의 채널평가가 반영됨 :3점, 반영되지 않음 : 0점 | 3점 |
| 6 | 방송통신위원회 제재현황 반영 여부 | ① 채널 계약 선정기준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현황 및 결과가 반영됨 : 2점, 반영되지 않음 : 0점 | 2점 |
| 7 | 각종 상벌 반영 여부 | ① 채널 계약 선정기준에 각종 상벌 등이 반영됨 : 1점, 반영되지 않음 : 0점 | 1점 |
| 8 | 채널선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 ① 지난 1년간 방송채널사업자로부터 채널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없음 : 3점 ② 이의가 있을 경우 선정심사정보를 제공함 : 3점, 제공하지 않음 : 0점 | 3점 |
| 9 | 무료계약 여부 | ① 지난 1년간 채널사업자와의 무료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음 : 4점 ② 지난 1년간 채널사업자와의 무료계약 채널의 수가 1개일 경우: 3점, 2~3개일 경우 2점, 4~5개일 경우1점, 6개 이상일 경우 0점 (단, 홈쇼핑 채널 제외) | 4점 |

상품선정기준의 적정성 평가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배점 |
|---------------------------------------|--|-----|
| | | 30점 |
|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 -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의 명문화 여부 | 4점 |
| | -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 3점 |
| | - 중소기업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 5점 |
| | - 농어민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 3점 |
| | - 복수 업자간 공정 경쟁 유도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 4점 |
| | - 납품업자에게 선정기준 공개 여부 | 3점 |
| | - 납품업자의 친인척인 임직원이 선정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는지 여부 | 2점 |
| | - 납품업자 제출 문서의 사실 여부 확인 절차 유무 | 2점 |
| | - 상품 선정과 관련된 임직원 윤리강령 조항 유무 | 2점 |
| | - 납품업자 불만 처리 창구 유무 | 2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세부 배점방식

| | 세부 항목 | 세부 배점방식 | 배점 |
|---|-----------------------|---|----|
| 1 |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의 명문화 여부 |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 상품(납품업자) 평가 Sheet, 기타 명문화된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 지표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4점 부여 | 4점 |

| | 세부 항목 | 세부 배점방식 | 배점 |
|----|--------------------------------------|--|----|
| 2 |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 적절한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 1점 부여. 편성 실적이 있으나 5% 미만인 경우 1점, 5% 이상인 경우 2점 추가 부여 | 3점 |
| 3 | 중소기업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 적절한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 2점 부여. 편성 실적이 있으나 50% 미만인 경우 1점, 50% 이상인 경우 3점 추가 부여 | 5점 |
| 4 | 농어민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 적절한 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경우 1점 부여. 편성 실적이 있으나 5% 미만인 경우 1점, 5% 이상인 경우 2점 추가 부여 | 3점 |
| 5 | 복수 업자간 공정 경쟁 유도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 신상품 창구 개방, 복수협력사 거래, 기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내부 기준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4점 부여 | 4점 |
| 6 | 납품업자에게 선정기준 공개 여부 | 신규입점 절차 및 선정기준 공고, 입점계시판 등의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 상담창구에서 입점 상담시 구두로 공개,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선정기준 공개 절차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3점 부여 | 3점 |
| 7 | 납품업자의 친인척인 임직원이 선정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는지 여부 |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규제사항, 관련 제보 접수 시 경영진단팀에서 사규를 통해 제재, 고객평가단의 상품 선정,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임직원의 선정 관여 배제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 2점 |
| 8 | 납품업자 제출 문서의 사실 여부 확인 절차 유무 | 공공기관 또는 외부신용평가기관 등을 통한 문서의 사실 여부 확인, 사전 품질 확인 절차, 사전심의 의무화, 고객평가단의 상품 선정, 회계재무팀 등 담당부서 재확인 절차,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서 사실 여부 확인 절차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 2점 |
| 9 | 상품 선정과 관련된 임직원 윤리강령 조항 유무 |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내규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 2점 |
| 10 | 납품업자 불만 처리 창구 유무 | 건의 창구 마련, 협력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을 통한 불만 접수 및 처리, 즉각적인 불만 처리에 대한 상근조직 운영,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납품업자 불만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0~2점 부여 | 2점 |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가. 평가대상

- 홈쇼핑PP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배점 |
|------------------------|-----|
|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 결과 | 20점 |
|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 1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 결과,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로 측정

※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항목 도입절차

- 1차 년도에는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항목을 제외하고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결과』 항목만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30점 만점으로 환산
- 2차 년도부터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항목을 평가하되,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시 협력업체의 개선요구사항을 추가하여 차기년도 반영 정도를 피드백의 적절성으로 평가
- 다만, 협력업체 일방의 입장이 협력업체 개선요구사항으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요구사항의 정당성 및 귀책사유가 방송사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피드백의 적절성 여부 평가리스트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의 적절성을 평가

○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 평가 결과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
| 1 | 협력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만족도 | 협력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만족도 | 4점 |
| | |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 |
| 2 |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유통업체에 납부하는 방송 판매 수수료에 대한 만족도 | 4점 |
| | | 유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 |
| 3 | 판매대금 지급에 대한 만족도 | 판매대금 기한 내 지급 여부에 대한 만족도 | 4점 |
| | | 대금 납부 방법에 대한 만족도 | |
| | | 납품 대금 감액 여부에 대한 만족도 | |
| 4 | 상품 취급에 대한 만족도 | 부당한 수령 지체 정도 | 4점 |
| | | 부당한 반품 정도 | |
| 5 | 부당요구 등에 대한 평가 | 판촉행사 강제 정도 | 4점 |
| | | 경제적 이익 강요 정도 | |
| | | 사업 활동 방해 정도 | |

○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결과 피드백의 적절성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
| 1 | 평가결과 피드백 (개선활동)의 적절성 | 피드백을 적절하게 수행함 | 10점 |
| | | 피드백을 수행하였으나 미흡함 | 5점 |
| | | 피드백을 수행하지 아니함 | 0점 |

자막고지방송·가상종료 추진실적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배점 |
|-------------|----------|-----|
| | | 40점 |
| 자막고지방송 추진실적 | <표 1> 참조 | 30점 |
| 가상종료 추진실적 | <표 2> 참조 | 1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자막고지방송 추진실적의 경우, ‘자막고지방송 가이드라인’(‘12.1.20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별지 1])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

- 단, 지역별 자막고지방송 추진단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 지역별 자막고지방송 추진단 협의결과, 자막고지방송 송출이 정상 추진된 것으로 인정되어 종료한 경우 종료 이후 기간은 만점 처리

<표 1> 자막고지방송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점수(월 단위)

| 자막고지방송 추진실적 | | 평가점수 |
|--------------------|----------|------|
| 1단계 (‘12.1~2월) | 준수 | 5점 |
| | 1-2회 누락 | 4점 |
| | 3-4회 누락 | 3점 |
| | 5-6회 누락 | 2점 |
| | 7회 이상 누락 | 0점 |
| 2단계 (‘12.3~6월) | 준수 | 10점 |
| | 1-2회 누락 | 8점 |
| | 3-4회 누락 | 6점 |
| | 5-6회 누락 | 4점 |
| | 7회 이상 누락 | 0점 |
| 3단계 (‘12.7~12월) | 준수 | 15점 |
| | 1-2회 누락 | 12점 |
| | 3-4회 누락 | 9점 |
| | 5-6회 누락 | 6점 |
| | 7회 이상 누락 | 0점 |

○ 가상종료 추진실적의 경우, 디지털 방송 수신기 보급률 98% 이상 지역에 한해 가상종료(화면비율 100% 자막고지) 매일 2회 이상 실시 준수 여부 평가

- 보급률 98% 미만 지역의 경우, 자막고지방송을 지속 추진하되, 가상종료 추진실적 항목은 제외하고 자막고지방송 추진실적만으로 평가 후 방송평가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점수 환산

<가상종료 화면 예시>



<표 2> 가상종료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점수(월 단위)

| 가상종료 추진실적 | 평가점수 |
|-----------|------|
| 준수 | 10점 |
| 1-2회 누락 | 8점 |
| 3-4회 누락 | 6점 |
| 5-6회 누락 | 4점 |
| 7회 이상 누락 | 0점 |

라. 기타

- 전국방송인 EBS는 수도권 권역 시간대에 송출한 실적으로 평가
- 제주지역 방송사(제주 KBS, 제주 MBC, 제주 민방) 등 기(既)실시 방송사의 경우, 만점 처리
- '자막고지방송 가이드라인' 시행 대상이 아닌 방송사의 경우, 해당항목 평가를 제외하고 점수는 방송평가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산

< 자막고지방송 가이드라인 >

【 1단계('12.1~2월) 】 자막고지 개시, 화면비율 30% 이내

- (실시방안) 9개 권역별로 매일 2회 실시하고, 모든 시간대 자막고지가 되도록 실시시간은 권역별로 매일 30분 단위로 이동
 - ※ 권역별 자막고지방송 실시 순서 : 수도권 → 강원 → 충북 → 대전·충남 → 대구·경북 → 부산·울산 → 경남 → 전북 → 광주·전남
- 09:00~21:30, 권역별 30분내 실시, 주시청시간 포함 원칙
- 주시청시간(20:00~21:30)에는 6개 권역별로 주 1회 실시(수도권 주 2회)
 - ※ 6개권역 : 수도권, 강원·전북,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 뉴스·특집방송 등으로 인해 '권역별 실시시간'에 자막고지방송을 할 수 없는 방송사는 '권역별 실시시간' 전·후 탄력적으로 실시
- (자막내용) 종료일, 시청하는 방송이 “아날로그 방송”이라는 사실, 정부지원 내용, 콜센터 전화번호 등 안내

【 2단계('12.3~6월) 】 화면비율 50% 이내

- (실시방안) 9개 권역별로 매일 2회 실시하고, 권역별로 실시시간은 매일 30분 단위로 이동
- 그 외 사항은 1단계와 동일

【 3단계('12.7~12월) 】 화면비율 50~100%

- (실시방안) 정부지원 실적 등을 고려, 9개 권역별로 매일 4회 이상 실시
- 1회당 30분 이내(오전 : 2회, 오후 : 2회), 권역별로 중첩가능
 - ※ 권역별로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이 98% 달성된 경우 자막고지방송에서 가상종료로 전환 (매일 2회 이상 실시)

| 구 분 | '12.1~2월 30% 이내 | '12.3~6월 50% 이내 | '12.7~12월 50% 이상 |
|------|---|--|---|
| 화면비율 |  |  |  |

콜센터 운영실적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SO, 위성방송

나. 배점방식

< 지상파 >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배점 |
|------------------|--------------|-----|
| | | 20점 |
| 디지털전환 상담 콜센터 설치 | 설치 만점/미설치 0점 | 10점 |
|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및 고지 | <표 1> 참조 | 4점 |
| 디지털전환 상담 매뉴얼 마련 | 구비 만점/미구비 0점 | 2점 |
| 콜센터 상담실적 보고서 제출 | <표 2> 참조 | 4점 |

< SO, 위성방송 >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배점 |
|---|----------|-----|
| | | 20점 |
| 디지털 전환 및 가입(SO는 디지털 상품, 위성방송은 HD 상품)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및 고지 | <표 3> 참조 | 10점 |
| 콜센터 상담실적 보고서 제출 | <표 4> 참조 | 1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지상파>

- 디지털전환 상담 콜센터 설치는 기존 콜센터와 별개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별도의 전화번호와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함
 - 이 경우, 방송사의 대표전화를 통해 디지털관련 별도 내선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 인력 배치는 디지털방송콜센터 운영시간인 09:00-22:00(평일,주말,공휴일)를 기준으로 함

- 디지털전환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및 고지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방송 콜센터' 전화번호와 함께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상담 관련 전화번호를 함께 안내·고지하는 경우를 가리킴
- 안내 및 고지는 방송화면(자막 포함)과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및 고지를 의미하며, 방송화면을 통해 안내 또는 고지 시, 매일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표 1>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고지 실적에 따른 평가점수

| 안내/고지 실적 | 평가점수 |
|-----------------------|------|
| 방송화면(매일 1회 이상) / 홈페이지 | 4점 |
| 방송화면(매일 1회 이상) | 3점 |
| 홈페이지 | 2점 |
| 실적 없음 | 0점 |

- 디지털전환 상담 매뉴얼은 DTV Korea에서 만든 매뉴얼 인정
- 디지털 전환 관련 상담실적 보고서에 ①상담일시, ②상담내용, ③처리여부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표 2> 상담 실적 보고서 제출에 따른 평가 점수

| 상담실적 보고서 | 제출여부 | | 제출 보고서 평가 | | |
|----------|------|-----|-----------|----|----|
| | 제출 | 미제출 | 양호 | 보통 | 미흡 |
| 지상파 | 2점 | 0점 | 2점 | 1점 | 0점 |

<SO, 위성방송>

- 디지털전환 및 가입 (SO는 디지털 상품, 위성방송은 HD 상품)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및 고지의 경우, 방송화면(자막 포함)과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및 고지를 의미함
- 방송화면을 통한 안내 또는 고지의 경우 시청자의 시청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일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표 3>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고지 실적에 따른 평가점수(월)

| 안내/고지 실적 | 평가점수 |
|-----------------------|------|
| 방송화면(매일 1회 이상) / 홈페이지 | 10점 |
| 방송화면(매일 1회 이상) | 7점 |
| 홈페이지 | 3점 |
| 실적 없음 | 0점 |

- 디지털 전환 관련 상담실적 보고서에 ①상담일시, ②상담내용, ③처리여부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표 4> 상담 실적 보고서 제출에 따른 평가 점수

| 상담실적 보고서 | 제출여부 | | 제출 보고서 평가 | | |
|----------|------|-----|-----------|------|----|
| | 제출 | 미제출 | 양호 | 보통 | 미흡 |
| SO · 위성 | 5점 | 0점 | 5점 | 2.5점 | 0점 |

라. 기타

- 제주지역 방송사(제주 KBS, 제주 MBC, 제주 민방) 등 기(既)실시 방송사의 경우, 만점 처리

송신시설 디지털전환 실적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배점 |
|----------------|----------|-----|
| 송신시설 디지털 전환 실적 | <표 1> 참조 | 2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분기별 송신시설 교체실적(아날로그 대비 DTV 교체실적)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송신시설’은 “방송보조국(중계소)”을 의미하며, ‘교체실적 비율’은 방송사가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에 월별로 보고하는 내용을 준용함
 - ※ 2012년 6월까지 송신시설 디지털 전환 100% 완료는 재허가시 부관사항

<표 1> 분기별 달성 실적에 따른 평가점수

| 2012년 6월 완료 | 2012년 9월 완료 | 2012년 12월 완료 | 2012년 12월 현재 | |
|----------------|----------------|-----------------|--------------|--------|
| | | | 90% 이상 | 90% 미만 |
| 20점 | 15점 | 10점 | 5점 | 0점 |

라. 기타

- 제주지역 방송사(제주 KBS, 제주 MBC, 제주 민방), OBS 등 송신시설 디지털 구축이 완료된 방송사의 경우, 만점 처리
- EBS는 방송법 제54조(공사의 업무)제1항제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에 따라 KBS가 송신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하고 점수는 방송평가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산

디지털 전환 홍보 실적 평가

가. 평가대상

- 지상파 방송사업자(TV)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배점 |
|--------------|----------|-----|
| | | 20점 |
| 단독 프로그램 방송횟수 | <표 1> 참조 | 8점 |
| 프로그램 내 방송횟수 | <표 2> 참조 | 4점 |
| 캠페인 방송횟수 | <표 3> 참조 | 4점 |
| 자막 방송횟수 | <표 4> 참조 | 4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디지털 전환홍보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정보전달 사항에 국한하되, 방송사업자의 추진실적(최고)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
 - 단독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방송분야(보도, 교양, 오락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디지털 전환홍보와 관련한 10분 이상의 별도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한 개 프로그램 내에서 꼭지로 제작되어 10분 이상 방송한 경우, 이를 단독 프로그램으로 인정
 - 캠페인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든 캠페인과 공익광고(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제작한 광고)를 가리키며, 10분 미만의 단독 프로그램은 캠페인으로 간주

<표 1> 단독 프로그램 방송횟수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

| 단독 프로그램 방송횟수 | 평가점수 |
|-----------------|------|
| 80% 이상 - 100% | 8점 |
| 60% 이상 - 80% 미만 | 6점 |
| 40% 이상 - 60% 미만 | 4점 |
| 20% 이상 - 40% 미만 | 2점 |
| 20% 미만 | 0점 |

<표 2> 프로그램 내 방송횟수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

| 프로그램 내 방송횟수 | 평가점수 |
|-----------------|------|
| 80% 이상 - 100% | 4점 |
| 60% 이상 - 80% 미만 | 3점 |
| 40% 이상 - 60% 미만 | 2점 |
| 20% 이상 - 40% 미만 | 1점 |
| 20% 미만 | 0점 |

<표 3> 캠페인 방송횟수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

| 캠페인 방송횟수 | 평가점수 |
|-----------------|------|
| 80% 이상 - 100% | 4점 |
| 60% 이상 - 80% 미만 | 3점 |
| 40% 이상 - 60% 미만 | 2점 |
| 20% 이상 - 40% 미만 | 1점 |
| 20% 미만 | 0점 |

<표 4> 자막 방송횟수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

| 자막 방송횟수 | 평가점수 |
|-----------------|------|
| 80% 이상 - 100% | 4점 |
| 60% 이상 - 80% 미만 | 3점 |
| 40% 이상 - 60% 미만 | 2점 |
| 20% 이상 - 40% 미만 | 1점 |
| 20% 미만 | 0점 |

라. 기타

- 제주지역 방송사(제주 KBS, 제주 MBC, 제주 민방) 등 기(既)실시 방송사의 경우, 만점 처리

디지털 상품/HD 상품 전환 및 가입률 평가

가. 평가대상

- SO, 위성방송

나. 배점방식

| 평가척도 | 세부기준 | 배점 |
|--|----------|-----|
| 디지털 전환 및 가입률 (SO - 디지털 상품, 위성방송 - HD 상품) | <표 1> 참조 | 30점 |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디지털 전환 및 가입비율’이란, SO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디지털 상품 가입자의 비율을, 위성방송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HD 가입자의 비율을 말하며, 전환 및 가입률 실적(최고)에 따른 상대 평가를 하되,
 - ①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그룹과 ② 그 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그룹 내에서 상대 평가
 - ※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말함
 - 전국권역인 위성방송은 대도시 그룹에 포함하여 평가

<표 1> 디지털 전환 및 가입률 비율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

| 비율 | 평가점수 |
|-------------------|------|
| 87.5% 이상 | 30점 |
| 75% 이상 ~ 87.5% 미만 | 27점 |
| 62.5% 이상 ~ 75% 미만 | 24점 |
| 50% 이상 ~ 62.5% 미만 | 21점 |
| 37.5% 이상 ~ 50% 미만 | 18점 |
| 25% 이상 ~ 37.5% 미만 | 15점 |
| 12.5% 이상 ~ 25% 미만 | 12점 |
| 12.5% 미만 | 9점 |
| 0% | 6점 |